

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6. 7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보건
정책과)

1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른 위임 근거 명시(안 제1조)
- 나.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의 명확성 확보
- 다. 조문상 용어·표기 오류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 수수료의 근거 규정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 중 “수수료 3천원을” 을 “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” 로 개정되어,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
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
사료됨.